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②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③

- ① 소급효금지 원칙은 보안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고 사회봉사만 예외적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② 자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를 좁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해 지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

2. 다음 중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 ②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경우
 - ③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삭제된 경우
 - ④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경우

정답③

판례는 법률이 변경되어 처벌되던 행위가 처벌되지 않게 된 경우 법개정의 이유를 따져서 법 개정의 이유가 반성적 고려인 경우는 1조 2항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하나 단순한 정책적 이유인 경우는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3.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 ②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 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④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②

- ① 판례는 차량대 보행자간의 교통사고에서 신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고속도로상 사고, 신호등에 따른 이동시 사고, 유파밀에서의 사고시는 신뢰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② 교통방해죄도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 ③ 과실범은 결과범이므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 ④ 과실범에서 주의의무 위반 판단의 기준은 동일 업무 종사자이다

4.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③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라고 볼 수 없다.
- ④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정답 ②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

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트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
-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믿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하는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 ④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없음

정답 ④

6. 다음 중 「형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 | | |
|------------|---------|------------|
| ㉠ 사인위조죄 | ㉡ 불법체포죄 | ㉢ 특수도주죄 |
| ㉡ 영아살해죄 | ㉣ 인질치사죄 | ㉣ 점유이탈물횡령죄 |
| ㉤ 사문서부정행사죄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①.⑤)

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 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 ③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하였더라도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라면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정답 ④

- ① 공동정범은 범행전 모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 의사의 상통만으로도 성립한다
- ②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의사만으로는 방조범이 될 뿐이고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한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공동점범이 성립한다
- ③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나 이외의 누군가가 자신의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다면 의사 연락을 인정할 수 있다

8.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 ②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 ③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 ④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②

② 교사범은 특정한 범죄를 교사하여야 하나 일시 장소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④ 필요적 공범의 내부 참가자에게는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여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
- ②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행위
- ③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 ④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정답 ③

판례는 ③을 제외한 모든 지문과 동일한 사례에서 사후행위가 주된 범죄의 불법량을 초과한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였다

10.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②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③ 사기의 수단으로 발생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④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 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 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상습성이 있어도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이 성립 할 뿐이다
- ③ 실체적 경합이다
- ④ 사기죄가 성립한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 ③ 피해자(여)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만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 할 수 없다.
- ④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정답 ③

- ① 효과 없는 교사로서 예비음모로 처벌이 가능하다
- ② 피해자가 동일할 때 포괄일죄이고 피해자가 다르다면 실체적 경합이다
- ④ 상해죄는 반의사불법죄가 아니다

12. 「형법」 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족상도례 규정은 강도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절도죄 및 상습절도죄에는 적용된다.
- ②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 ③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 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④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정답 ④

장물범과 본범간에 328조 1항의 관계에 있을 때 필요적 감면 사유이다

13.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 ②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④ 상습사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정답 ④

① 삼각사기도 가능하다
③ 장부상 재투자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불가별적 사후행위이기 때문이다
④ 미수범을 처벌한다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⑦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⑧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⑨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

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껴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착수가 인정된다.
⑩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 ① ⑦
- ② ⑦ ⑨ ⑩
- ③ ⑦ ⑨
- ④ ⑨ ⑩

정답 ③

① 법인도 포함된다

- ⑤ 원인이 판명된 경우는 각자의 책임량에 따라 처벌되고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 형법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 ⑥ 강간죄의 폭행은 최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폭행을 하여 상대방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1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⑦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더라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행위에 해당한다.
- ⑧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정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⑩ 배임수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정한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 ⑪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 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피고인에게 장물양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① ⑦ ⑨ ⑩
- ② ⑨ ⑩
- ③ ⑨ ⑩
- ④ ⑩

정답 ④

- ⑫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제시 서명 교부까지 하여야 기수가 되므로 서명 한적이 없다면 미수에 불과하나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이다
- ⑬ 경쟁입찰과 비교하여 공사대금에 차이가 없다면 손해발생의 위험도 없다
- ⑭ 배임행위가지 나갈 필요 없으며 배임행위까지 나갔다면 배임수재와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 ⑮ 고의는 미필적으로 충분하므로 장물양도죄가 성립한다

16.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챈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
- ③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허위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정답 ②

-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 있는 재물이나 권리를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등을 했을때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분할청구에 기한 가압류를 면탈 목적의 허위채무부담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③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도 동일하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이익 취득 위험이 있어도 성립하므로 시가액보다 담보된 채무액이 더 크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한다

17.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④

- ③ 변조란 진정 성립된 유가증권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변조된 유가증권은 변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은 변조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위조의 대상은 될 수 있다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⑦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해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 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 위조죄를 구성한다.
- ㉢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면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① ㉠㉡

③ ㉡㉢

② ㉡㉢

④ ㉠㉡㉢

정답 ①

- ㉠ 2016년 판례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
- ㉡ 위조죄는 명의모용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발급하는 문서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자가 허위내용을 기재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 ㉣ 각종대장은 사실관계를 표시하는 문서로 공정증서가 될 수 없다
- ㉤ 법령 정관에 위배되어 사법상 무효여도 동일 내용의 임원 개임 결의가 있었다면 허위 내용을 기재 했다고 말할 수 없다

1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법원에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그 즉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정답 ③

- ①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어야만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한다
- ② 허위 주장만으로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도 포함한다

2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

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모해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 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 ③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나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증거 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여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정답 ③

- ② 고의와 마찬가지로 목적도 미필적으로 충분하므로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다
- ③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어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 ④ 증거위조죄의 위조와 문서위조죄의 위조는 용어는 동일하나 그 의미는 상이하므로 증거위조죄의 위조는 작성명의여부나 내용의 진실성여부로 판단할 수 없다